

날 짜 : 2021.05.04.(화)
발 신 : 정책위원장
수 신 : 교육 담당기자
담 당 : 김상희 부대변인
(010-6577-3202)



다함께 행복한 교육,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82-33, 3층 (08806)
<https://kftu.net/> 대표전화 02-522-8130 전송 02-522-8131
유윤식 정책위원장 02-522-8130, 010-7226-0083 / E-mail: yooysk@hanmail.net

“교원노조법 위헌이다! 전면 개정하라!” 교사노조연맹,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교사노조연맹은 한국노총과 함께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교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어 달리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사노조연맹과 한국노총은 5월 4일(화) 오후 2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기자회견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김용서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올 1월 5일, ILO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존치하는 법 개정을 하였으나, 교원노조법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교원노조는 ILO 권고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지난 4월 20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시대적 흐름에 맞게 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조항들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금번 위헌소송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자는 것이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한국노총은 교사노조연맹과 함께 교원노조를 튼튼히 만들기 위한 교원노조법 전면개정 추진을 비롯하여 노조법의 각종 독소조항 및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대표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는 달

리 오히려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전임자 보수지급 금지 조항’의 경우, 노조법에서는 삭제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며, 노조법과 달리 근로시간면제 규정조차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교원노조 전임자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제2항),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공공노총(교사노조연맹 가맹) 이충재 위원장은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에 전임자 보수 지급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제14조 제2항을 통해 근로시간면제 규정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며,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에 대해 발언하고, 교원노조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노동조합이 담당하는 노조의 순기능적 측면을 인정해 도입한 것이라며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2010헌마606)” 며, “교원의 노동조합도 일반노조와 같이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며 헌법재판소에 위한 판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사노조연맹 김용서 위원장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문성덕 대표 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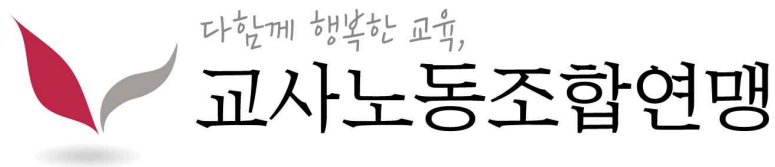
※ 붙임자료

[붙임1] 김동명 위원장 모두발언 1부

[붙임2]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1부

[붙임3] 기자회견문 1부. 끝.

2021. 05. 04.



※ 붙임 1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2021.05. 04(화) 2시 30분 헌법재판소 앞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2021년 5월 4일, 한국노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원노조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교원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시간 면제 등의 규정을 교원노조법에서 제외하는 제14조 제2항 중 “제24조, 제24조의 2 부분”이 그 대상입니다.

지난 4월 20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제29호 협약을 비롯하여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그리고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2022년 4월 20일부터 발효됩니다.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수년간의 사회적 대화를 포함하여, 국회를 통한 노조법 개정 및 국회 비준 촉구 등의 다양한 경로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했고,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여전히 ILO 핵심협약 비준 시대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조항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이 삭제되고, 한발 더 나아가 전임자 노사자율 쟁취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에,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아직도 구태의연한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단체행동권의 제한 등을 유지한 채 ‘노조활동제한법의 오명을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은 지난 2월 25일 교육연맹 및 광역연맹과 함께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으며, 오늘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교원노조법의 헌법소원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위헌소송은 교원노조에게 특권을 달라는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만민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자는 것이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한국노총은 여기 계신 교사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교원노조를 튼튼히 만들기 위한 교원노조법 전면개정 추진을 비롯하여 노조법의 각종 독소조항 및 차별적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투쟁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한국노총과 함께 교원의 노동기본권 전면쟁취와 노

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붙임 2

교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1. 사건정보

청구인 : 교사노동조합연맹 외 35 명

- 교사노동조합연맹 및 산하 단위노조
- 위 노조 소속 전임자

심판청구대상 :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중 '제24조, 제24조의 2 부분'

2. 관련 기본권(침해된 권리)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기본권, 제11조 평등권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 교원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중 제24조, 제24조의2 부분)

- 노조법은 제정시부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두고 있었지만, 2009. 12. 31.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였고, 2010. 1. 1.부터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실제 일반 노동조합에서 전임자에게 일체의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일은 없었음.
-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둔 것만으로는 노동기본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들여, 노조법은 2021. 1. 5. 개정으로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
- 그럼에도 교원노조법은 전임자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면서도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규정 조차 두지 않고 있음. 교원노조법 제14조 제2항은 노조법의 근로시간면제와 관련된 조항(제24조, 제24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교원노조 전임자만 급여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노동기본권(헌법 제33조 제1항), 평등권(헌법 제11조)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음.

4. 청구이유 개요

- 가.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교원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제14조 제2항 중 제24조, 제24조의2 부분은 청구인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침해
- 교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교원 노조의 자주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음. 그럼에도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은 전면적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

- 지하고 있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수단의 적합성 결여).
- 또한, 교원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전면 금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보상적 조치로 평가 받는 근로시간면제제도조차 도입하고 있지 않아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함(침해의 최소성 원칙 위반).
 - 한편, 교원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을 금지함으로써 달성하는 공익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노동조합 활동 위축으로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심대하므로 법익균형성에도 반함(법익균형성 위반).
 -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중 노조법 제24조, 제24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집단적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침해.

나. 교원노조법 제5조 제3항(교원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제14조 제2항 중 제24조, 제24조의2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

- 일반 노동조합과 교원 노조의 전임자 모두 노사의 업무를 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동일함. 그럼에도 교원노조 전임자만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는 적합성과 비례성원칙에 반하여 교원노조 전임자를 일반노조 전임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 침해.

다. 국제법 존중주의 위배

- ILO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의 기본 원칙에 관한 협약으로 노사의 자발적인 단체 설립, 가입과 자유로운 활동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은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와 자율적인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한국은 최근(2021. 4. 20.) ILO 협약 제87호 및 제97호 비준서를 기탁하였음. 따라서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위 협약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전임자 급여 지급 여부에 대한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는 바, 이는 자발적 교섭 기구를 통해 노사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ILO 협약 제87호 및 제98호의 취지에도 반함.

5. 헌법소원심판청구 일정

2021. 5. 4. 14:00

※ 붙임 3

[기자회견문]

노조할 권리 차별하는 위헌법률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하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교사노조연맹, 이하 청구인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의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적용 배제하는 교원노조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올 1월 5일, ILO 협약을 존중한다면서 ILO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존치하는 법 개정을 하였으나, 교원노조법은 이와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하였다. 때문에 교원노조는 ILO 권고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

지난 4월 20일 정부는 강제노동 금지와 결사의 자유 등 핵심협약 세 건의 비준서를 ILO 측에 기탁해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마무리했다. 교원의 노동조합이라고 하여 ILO 협약 존중 대 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ILO협약에 맞게 전면 개정해야 한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9년 1월 29일 교원노조법 제정 당시,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 창구 단일화 조항 등과 함께 교원노조에 먼저 적용하기로 하여 교원노조법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반노조에서 위 3가지 제도의 적용이 3차례나 유예되다가 2010년 복수노조와 창구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법제화 되면서 대신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근로시간면제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었다.

그리고 10년 후인 올해, 일반노조법에서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ILO협약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삭제되었으나, 교원노조법에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일 뿐 아니라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위헌적 차별이다.

헌법재판소는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노동조합이 담당하는 노조의 순기능적 측면을 인정해 도입한 것이라며 그 합헌성을 인정한 바 있다(2010헌마606).

교원노동조합도 일반노조와 같이 사용자의 노무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원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노무관리 비용을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사실상의 부당노동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교원노조에 대해서도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이를 통해 교원노조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자, 천부 인권인 노동3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엄정히 물어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

한국노총과 60만 교육노동자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위헌법을 교원노조법 전면 개정하라!

교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하라!

2021년 5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